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골목길 슈퍼마켓도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사례와 문답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실무 해설서



중소기업청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골목길 슈퍼마켓도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사례와 문답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실무 해설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



START

영리 개인사업자 인가요?
(18페이지 참조)

NO

NO

영리법인 인가요?
(18페이지 참조)

YES

주업종을 확인 해 주세요
(28페이지 참조)

YES

NO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가요?
(40페이지 참조)

YES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규모 기준 미만인가요?
(13페이지 참조)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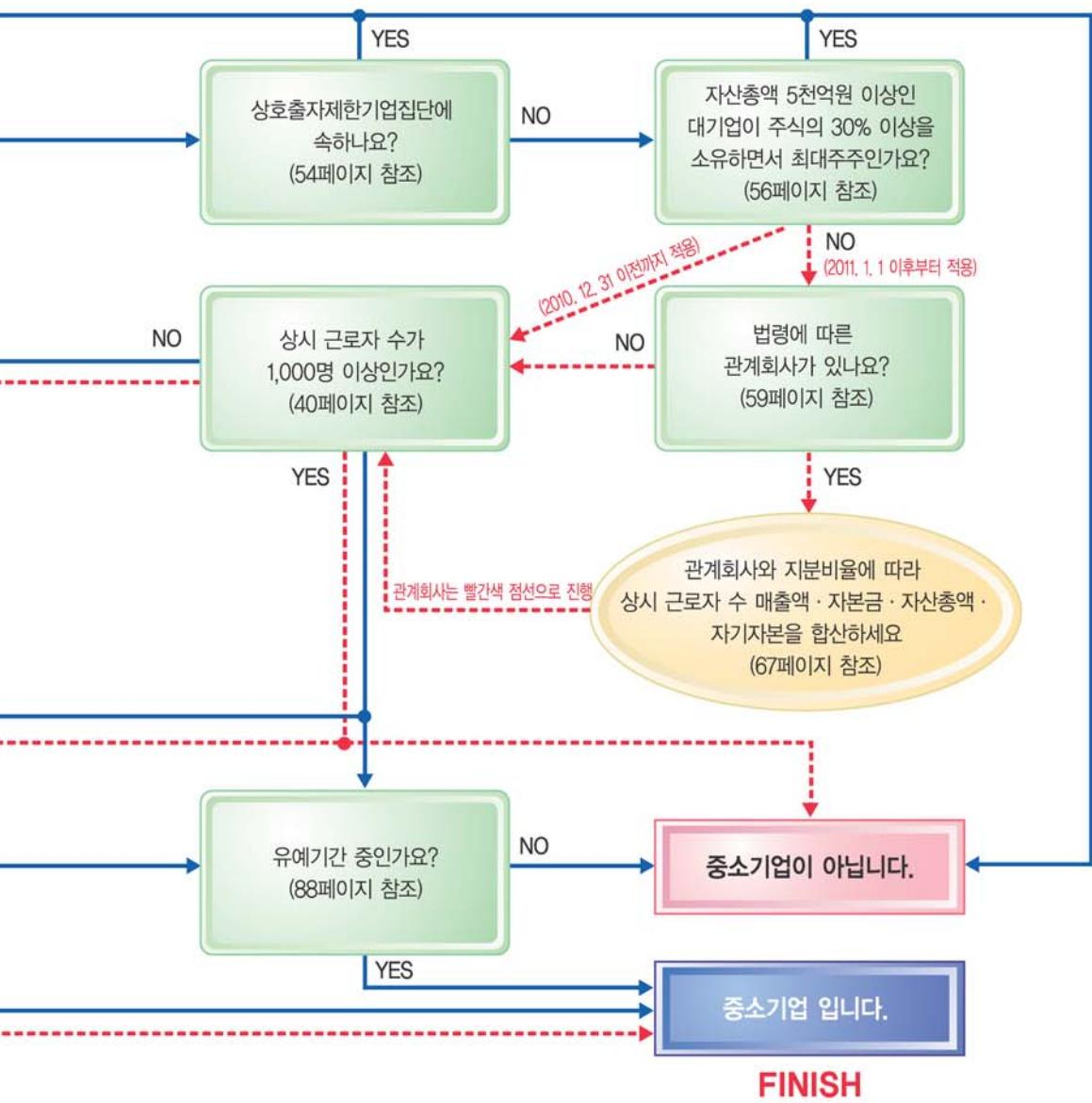
YES

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하인가요?
(13페이지 참조)

YES

NO

간편 흐름도 >



목 차

01

중소기업이란?

12

① 중소기업의 개념	12
② 지원의 필요성	17
③ 이런 회사는 중소기업이 될수 없다	18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21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28

① 주업종 기준	28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30
③ 자본금 기준	33
④ 매출액 기준	36
⑤ 상한기준	40
⑥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판단 기준	43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46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54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54
②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판단 기준	56
③ 관계회사 기준	59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77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88

① 유예기간	88
② 경과조치	89
③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기준	91
※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95

05

참고자료(법령)

99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100
■ 중소기업기본법('08. 12. 26. 현행)	10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 12. 31. 현행)	107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 03. 25.)	117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5. 12. 27)	127

사례(FAQ)별 찾기

중소기업이란? *

<번호>

<page>

1 상시 근로자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1
2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는?	21
3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1
4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2
5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2
6 단위농협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2
7 영농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2
8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23
9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요?	23
10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하나요?	24
11 보험모집인, 지입차량 차주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요?	24
12 법인의 여러 사업장은 중소기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나요?	24
13 중소기업기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중소기업 범위 차이점은?	24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기준) *

<번호>

<page>

14 프랜차이즈업은 주업종이 무엇인가요?	46
15 호텔이 숙박보다 커피숍 등 부대업의 매출이 많은 경우 주업종은?	46
16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은?	46
17 다른회사의 PC를 구입하여 자사의 SW를 탑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은?	47
18 외국인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47
19 파견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47
20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48
21 여러 개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48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기에 한 번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48
23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린?	49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4 중도 퇴사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여부는?	49
25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자본금 산정은?	50
26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이 분할하면 자본금은?	50
27 결산일 변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되는 경우 매출액은?	50
28 사업자등록만 하면 중소기업이 되나요?	51

기업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

<번호>	<page>
29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77
30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77
31 50 : 50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는?	78
32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주식회사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79
33 직접소유와 간접소유는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79
34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79
35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식은?	80
36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외국기업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81
37 KBS가 40%, KT가 35%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82
38 기업과 기업 간에 주식 등을 소유할 경우 관계회사 제도 적용 사례	82
39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소유할 경우 관계회사 제도 적용 사례	8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

<번호>	<page>
40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판단기준은?	95
41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강화되고 기업의 규모도 커져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 판단기준은?	95
42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96
43 중소기업 확인은 어디서 하며, 확인서를 발급해 주나요?	97
44 직접생산확인제도란?	97

중소기업 기준(요약)

1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TIP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입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자본금)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택일주의로 운영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 매출액 기준>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건설업	F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 자기자본 500억 원,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12. 1. 1부터)
- ※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2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11. 1. 1부터)
※ 관계회사 : 기업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출자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Memo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 개념
2. 지원의 필요성
3. 이런 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01 중소기업이란?

0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① 중소기업의 개념

-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지만,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성〉

영리추구

- 영리를 추구
- 이익분배
- 계획성 · 계속성
- 영업활동 수행
- 인적 · 물적 조직

〈규모 기준〉

일정 규모 미만

- 업종별 규모 기준 미만 (13page 참조)
- 상한 기준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 자산총액 5,000억 원
 - 자기자본 500억 원 ('12. 1. 1부터)
 -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12. 1. 1부터)

〈독립성 기준〉

다른 기업과의 독립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아닐 것
-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규모 기준 미만일 것 ('11. 1. 1부터)

T I P

규모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 자본금 등 기업의 외형적 크기가 일정기준 이내일 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독립성기준이란?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 같이 외형적으로만 독립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특 성] 일차적인 요건은 '기업' 이어야 합니다.

※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사)

[규 모]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등의 외형적 규모가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독립성] 마지막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대기업의 계열사이면 안 되며, 계열사끼리 합산한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등의 규모가 아래 표의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 업종별 규모 기준(상시 근로자 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이란?

- ①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② 계획성 · 계속성을 가져야 함
-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함
- ④ 인적 · 물적 조직을 가져야 함

01 중소기업이란?

■ 상한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12. 1. 1부터)

관련 법조문

TI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모든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 이외의 다른 조문들은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 등의 세부 기준을 추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TIP

중소기업 기본법령에서는 대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을 대기업이라 칭하고 있지만 법령상 용어는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12. 1. 1 시행)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12. 1. 1 시행)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 근로자 수 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11. 1. 1 시행)

핵심 포인트

적용 시점

일반적으로 규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적용 하며, 독립성 기준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1

2010. 2. 1 현재 규모 기준 적용 방법

- ☞ 12월 말 결산기업인 경우 : 2009. 12월 결산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 매출액 · 자산총액 · 자기자본, 상시 근로자 수는 2009년도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연평균 인원을 적용
- ☞ 3월 말 결산기업인 경우 : 2009. 3월 결산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 매출액 · 자산총액 · 자기자본, 상시 근로자 수는 2008. 4월~2009. 3월까지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연평균 인원을 적용

적용 2

중소기업이 2010. 3. 1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2010. 3. 1 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

택일 주의

업종별 규모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두 요건을 모두 벗어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1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50명, 매출액 100억 원인 경우 중소 기업인가요?

- ☞ 도매업의 업종별 규모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200억 원 이하' 입니다. A기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2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자본금 30억 원인 경우 중소 기업인가요?

- ☞ 제조업의 업종별 규모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입니다.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지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TIP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도 중소기업 범위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서 80%가 중소기업임을 참고 바랍니다.

01 중소기업이란?

적용 3

건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350명, 자본금 35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건설업의 업종별 규모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입니다. A기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벗어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상한 기준

상한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에서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하나의 기준이 무한대로 커지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상한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2. 1. 1부터는 추가로 자기자본 500억 원과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200명, 자본금 7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업종별 규모 기준은 충족하지만, 상한 기준(상시 근로자 수 1,000명)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2

건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250명, 자본금 20억 원, 자산총액 5,5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만, 상한 기준(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3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자기자본 7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업종별 규모 기준과 현행(2010. 5월 현재)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 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계속해서 초과할 경우에는 2012. 1. 1부터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위의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돋고자 유예기간 및 독립성 기준 등 다른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지원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기업체의 99.8%, 고용의 88.4%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뿌리
 -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 · 소재의 생산기지
 - 지역 경제 발전, 자원 · 원자재 사용
 - 수출의 32%, 생산의 46%를 담당
 - 일상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생산
-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 · 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 · 기술 · 마케팅 · 수출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지자체 등 379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안내책자 및 중소기업 종합정보망(비즈인포)을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 I P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 또는 업종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시책 중에는 일부 업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알아보기

■ 지원 시책 안내책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smba.go.kr>) '2010 지원시책 중소기업 징검다리'
파일 출력 또는 e-book 활용
※ 2010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주제별, 분야별로 수록

■ 지원 시책별 실시간 정보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bizinfo.go.kr>)에서 검색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시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련사이트 링크 등 제공

01 중소기업이란?

③ 이런 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TIP

법인이란 사람(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 흔히 임금을 목적으로 출근하여 일하는 직장을 회사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과 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시설 학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타 법령에서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영리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1

사장 1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또는 병원, 한의원 등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3

사회복지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4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5

사립중학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TIP

기업은 그 단어 자체가 영리 활동을 전제하고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별도로 기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01 중소기업이란?

특별 법인

「상법」, 「민법」 외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비영리 법인임을 규정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1

새마을금고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2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Memo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 1



상시 근로자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의 상한선만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 또는 대표이사 1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0(제로)명이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참고로, 「상법」에서는 1명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하한선 기준(5,000만 원)도 2009.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사례 2



「중소기업기본법」에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외하는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상에서 비영리법인을 제외하는 명시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기업」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은 본질적으로 영리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법 제2조제4항(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타 법령에서 중소기업자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만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입니다. 만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었다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타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항은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

T I P

일반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슈퍼마켓은 상시 근로자 수가 0(제로)명인 경우가 많으며, 상시 근로자 수 0명은 20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인창조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01 중소기업이란?

및 정관 등에서 이의 분배를 금지하는 등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 4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0(제로)명이더라도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 하며, 상한 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 5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금융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비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이 주업종이 되며, 두 업종 모두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도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6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 공장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7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T I P

사례 8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체육 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 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체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체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T I P

사례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특별 법인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서는 중소기업 시책별 특성에 따라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타 법령에서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법률의 적용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며 해당 비영리법인·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등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97페이지 <사례43> 참조)

학교기업과 학교 내의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창업보육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업 공간만 활용할 뿐이므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입찰용으로만 발급하며, 그 밖의 용도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공 입찰 목적 이외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은 판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무자가 법령에 따라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조세 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01 중소기업이란?

사례 10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령은 국내법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출자하여 중국에 설립한 기업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내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해외시장 진출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해 외국에 법인격이 없는 지점 또는 사무소(출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조직이므로 국내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례 11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서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입니다.

사례 12

A법인이 동일 법인 명의로 타 지역에 B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B공장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A법인과 B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 13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적 용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등 34개 업종
주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이 큰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금액이 큰 업종
업종별 규 모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상 한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자기자본 500억 원('12. 1. 1부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12. 1. 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원 자기자본 1,000억 원(시행 중) 매출액 1,000억 원(시행 중)
독립성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제외(만약,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
소기업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회사 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제조·건설·운송 : 5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1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 100인 미만 광업·건설·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10인 미만
유 예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 기업으로 봄(유예기간 반복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규모 기준 초과 - 상한 기준 초과('12. 1. 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 기준 초과

T I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업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정보서비스업」이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어느 업종까지 포함하는지 법령상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업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 여부는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Memo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 (규모 기준)

1. 주업종 기준
2. 상시 근로자 수 기준
3. 자본금 기준
4. 매출액 기준
5. 상한 기준
6.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판단 기준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자본금 · 매출액 등 기업의 크기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규모 기준'에 대해 기준별 세부 내용 및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주업종 기준

TI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 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 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세세분류 업종이 [별표1]에 없더라도 세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로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업종 분류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로 적용합니다.

〈 모기향을 만드는 기업의 주업종 〉

- 제조업(대분류 C)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세세분류 20411)
- 주업종이 제조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규모 기준을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kostat.go.kr/kssc>)에서 업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분류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범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업종이 정해지면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등은 모든 업종을 합산하여 기업 단위로 범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핵심 포인트

주업종

주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업태)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1

A기업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250명입니다. 매출액이 제조업 분야에서 150억 원, 도매업 분야에서 8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50명이므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2

A기업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350명,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매출액이 건설업 분야에서 150억 원, 제조업 분야에서 8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 건설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건설업이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A기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3

A기업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350명,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매출액이 건설업 분야에서 80억 원, 제조업 분야에서 15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 A기업의 주업종이 제조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제조업 기준인 80억 원보다 적은 50억 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초과하였지만 중소기업입니다.

※ 위의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돋고자 유예기간 및 독립성 기준 등 다른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TIP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및 업태는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상 주업종의 판단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2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직원을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모두 상시 근로자로 통칭하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적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①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③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T I P

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소득 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수(간이세액)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장,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이사를 제외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이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개월이 넘었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개월 미만인 기업	전달이 있는 경우 전달의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전달이 없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상시 근로자)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TIP

상시 근로자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은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중소기업 기준에 있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관련 법조문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핵심 포인트

산정 기준

2010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적용 1

2008. 10. 1에 창업(합병)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2009. 1월 ~2009. 12월)이므로 2009년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적용 2

2009. 3. 1에 창업(합병)한 경우 : 창업한 지 12개월이 지났으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2009. 3월~2009. 12월)이 12개월 미만(10개월)이므로 2010. 4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9. 5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적용 3

2009. 7. 1에 창업(합병)한 경우 : 창업한 지 12개월 미만이므로 창업한 2009. 7월부터 2010. 4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눈 인원

적용 4

2010. 4. 1에 창업(합병)한 경우 : 2010. 4월 말일 현재의 인원

적용 5

2010. 5. 1에 창업(합병)한 경우 : 2009. 5. 10일 현재의 인원

3 자본금 기준

- 자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서 주식 발행 등으로 출연한 금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등으로 구성
-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
- 자본 = 자산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

-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자본금은 단순히 재무상태표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기업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외부감사 대상 이외의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액(자산-부채) 중에서 많은 금액
창업하거나 합병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 ※ 이때,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각각의 자본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 업종별 규모 기준 [시행령 별표]에서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통해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 ②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 ③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④ 주권상장법인이거나 다음 해까지 상장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T I P

이후에 설명할 상한 기준의 자본은 자본 총계를 의미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자본금과는 다르므로 척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T I 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대차대조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재무상태 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자본금)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외부감사대상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 ②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핵심 포인트

T I P

업종별 규모 기준에서 자본금 기준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에만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 참조

외감 기업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계정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적용

적용 1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00억 원인 A기업(제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2

A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총액이 400억 원(자본금 50억 원, 자본잉여금 20억 원, 이익잉여금 300억 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억 원)인 경우 자본금은?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며, 이 경우 자본금(50억 원)과 자본잉여금(20억 원)을 합한 70억 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비외감 기 업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은 직접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금과 자본총액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

적용 1

자산총액이 65억 원, 상시 근로자 수 50명인 A기업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40억 원(자본금 10억 원, 자본잉여금 10억 원, 이익잉여금 20억 원)인 경우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므로 자본총액(40억 원)과 자본금(10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인 40억 원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2

건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350명, 자본총액이 70억 원(자본금 25억 원, 자본잉여금 20억 원, 이익잉여금 25억 원)인 유한회사입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유한회사는 규모가 크더라도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은 자본금(25억 원)과 자본총액(70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인 70억 원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3

A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자본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따르고, 자본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만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T I P

법률이 정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의 요건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업 합병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이 직접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1

2009. 1월에 창업한 기업의 2009. 5월 현재 자본금 산정은?

☞ 직접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이므로 창업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산정하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적용 2

2009. 9월에 창업(합병)한 기업의 2010. 2월 현재 자본금 산정은?

☞ 2009년도 말일 현재의 자본금을 적용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4 매출액 기준

T I P

업종별 규모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에만 적용합니다.

시행령 [별표1] 참조

- 매출액의 경우에도 자본금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산정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으로 산정

-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나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므로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 현재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후 다시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 또는 합병한 달에 포함되는 경우	창업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창업이나 합병한 다음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또는 합병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모든 기업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회계장부를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 등의 자료도 세법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에 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매출액)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외부감사의 대상)

-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외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생략)
 2. 주권상장법인(생략)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생략)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생략)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핵심 포인트

일반 기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1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을 영위한 A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인 경우 2010. 2월에 A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며, 2009년도 말일 현재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산정일 현재 2009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2

6월 결산 법인인 경우, 2009. 5월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직전 사업연도인 2008. 6월 말일 현재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3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 도매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업종별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A기업은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였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4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자본금 50억 원입니다. 매출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 현행(2010. 5월 현재)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을 적용할 뿐 매출액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매출액이 큰 편이지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조업이라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도 2012. 1. 1일부터는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1,500억 원을 넘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합병

창업하거나 합병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적용 1

A기업이 2009. 2. 5일에 창업한 경우, 2010년도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2010. 3월에 산정하는 경우 : A기업은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지만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2010. 2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9. 3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 2010. 1월에 산정하는 경우 : A기업은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았으므로 2009. 3월부터 2009. 12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2

A기업이 2010. 3. 5일에 창업한 경우, 2010. 3. 30일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므로, 2010. 3. 5일부터 2010. 3. 30일 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인 26으로 나누고 다시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3

A기업이 2010. 3. 20일에 창업한 경우, 2010. 4. 25일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창업한 달의 다음 달이 1개월 미만이므로 2010. 3. 20일부터 2010. 4. 25일 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인 37로 나누고 다시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위의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돋고자 유예기간 및 독립성 기준 등 다른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5 상한 기준

- 만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250명이지만 자본금 1,000억 원, 매출액 1조 원일 때 A사를 흔히 생각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 업종별 규모 기준은 택일주의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과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A사는 중소 기업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업종별 규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 자산총액 · 자기자본 · 매출액의 상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00억 원 이상(2012. 1. 1부터 적용)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2012. 1. 1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한 기준을 출업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업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 다)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 다. 자기자본이 5백억 원 이상인 기업('12. 1. 1 시행)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12. 1. 1 시행)

핵심 포인트

상한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1

2008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1,000명을 초과하고, 자본금 70억 원인 A기업(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 ☞ A기업은 업종별 규모 기준(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을 충족하지만 상한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1,000명을 초과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09. 1. 1부터 중소기업 제외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2

위의 A기업이 2010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1,0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상한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1,000명을 초과하므로 2011. 1. 1부터 중소기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2011. 1. 1부터 2011. 12. 31 까지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부여되나, 상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1. 12. 31까지만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됩니다.

적용 3

2008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중인 A기업이 2010년에 1,000명 미만이 된 경우에 중소기업 여부는?

- ☞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지만, 2010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이 되었으므로 2011. 1. 1부터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4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A기업이 2007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최초로 5,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 A기업은 상한 기준인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2008. 1. 1~2010. 12. 31) 유예기간을 부여받습니다.

TIP

현행 법률에서는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2. 1. 1부터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TIP

한번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규모의 축소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하게 되면 중소기업입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추가 기준

상한 기준 중에서 자기자본과 매출액 기준은 2012. 1. 1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 1

2009년에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자기자본 500억 원의 상한 기준은 2012.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계속 하여 500억 원을 초과한다면 2012. 1. 1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액 평균이 1,500억 원을 초과한 A기업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A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매출액 상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2012. 1. 1부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3

A기업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부채총액이 40억 원인 경우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자기자본은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 부채총액으로 산정 합니다. 따라서 A기업의 자기자본은 60억 원입니다.

Memo

T I P

상한 기준의 자기자본은 업종별 규모 기준의 자본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3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판단 기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기업에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과를 적용합니다.
- 그러나,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용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 합병의 경우에도 기업의 규모가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커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등의 산정 방법은 창업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창업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합병일	신설법인 : 법인의 설립등기일 존속법인 : 법인의 변경등기일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일

-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개월이 넘었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산정일이 창업 또는 합병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업
자본금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자본금	좌동	창업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
상시 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후 다시 12를 곱한 금액
자산 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자산총액	좌동	창업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산총액
자기 자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자기자본	좌동	창업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TIP

합병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산정 기준만 창업을 떠를 뿐이며, 중소기업 여부는 창업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이 창업 또는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범위 적용 방법
창업	<p>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 및 상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함</p> <p>※ 창업의 경우 산정 시점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나드는 극단적인 경우 중소기업 여부가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합병	<p>창업에 준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 및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받음</p> <p>※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p> <p>※ 대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으로 업종별 규모 기준 및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함 (88페이지 유예기간 참조)</p>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법인인 기업 :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핵심 포인트

창업 합병

창업 및 합병한 기업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

적용 1

2009. 2월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2009. 8월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 ☞ 창업할 당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급속한 규모 확장으로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적용 2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기업을 합병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합병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흡수 합병 또는 신설합병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적용 3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신설합병하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나요?

- ☞ 상법상 합병의 유형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며, 두 유형 모두 기존 회사의 재산·사원을 수용하는 등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신설합병이라 하더라도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일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범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합병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산정 방법은 창업의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 14

프랜차이즈업의 업종별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업은 브랜드 사용권을 임대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입니다.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규모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례 15

객실 매출액이 200억 원이고 직영하는 식당, 커피숍의 매출액은 300억 원인
호텔의 경우 주업종은?

일반적으로 호텔은 객실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 및 음식료 제공이 필수적인 것이므로 서로 다른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호텔업을 주업종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텔에서 직영하는 커피숍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대시설의 매출액이 크더라도 주업종은 호텔업이고,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 16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 업종이 동일한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세분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컴퓨터 제조(컴퓨터 제조업, 26310), 소프트웨어 CD제조(기록매체 복제업, 18200), OLED 제조(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는 모두 대분류인 제조업(C)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판단하며, 도매업(G)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비교하여 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사례 17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기업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PC를 구입하여 소프트웨어와 함께 재판매함.
소프트웨어보다 PC의 매출액이 클 경우 A사의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의 주업종은 매출액이 많은 업종으로 판단하므로, A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 주업종입니다. 소프트웨어는 PC가 없더라도 판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텔이 커피숍을 부대시설로 갖추는 것과는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 18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외국인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자,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 19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지휘와 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인력공급 및 인력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뿐,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관계를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사례 20

-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의 정의가 다른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어떤 법의 정의를 따르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일용근로자란 용어를 도입(1987. 12. 31)한 이후 법령에서는 별도의 용어 정의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따라왔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2002. 12. 30에 최초 신설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준의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 21

- 하나의 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원천세를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본금 등도 모두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참고 바랍니다.

사례 22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활용하라고 하였는데,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의 경우 2회의 결과만으로 평균인원을 산정한다면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 가능한 다른 서류(고용보험납부영수증, 의료보험납입영수증, 해당 기업의 임금지급 대장 등)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반기에 한 번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23

- 고용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인이 1, 2, 3월까지 근무하고 4월은 쉰 후 5, 6월을 근무할 경우 동일인이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단기간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유무에 관계 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업무 수행이 끝나고, 새로운 업무를 위해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씩 연속적으로 반복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규 채용 후 3개월 만에 퇴사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불연속적으로 재계약 하는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약용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24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근로소득란의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 중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에서 중도 퇴사 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소·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증기청 고시 제2009-8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실무 적용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에 표시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해당 기업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수를 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일이 기업마다 다르므로 급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표시된 근로자 수가 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간이세액의 인원으로 산정하여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퇴사나 신규 채용이 발생하여 간이세액의 인원을 연평균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 근거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기업 외형적 판단 기준(규모 기준)

T I P

가결산 재무제표는 기업이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5

- 12월말 결산법인인 A기업은 2010. 2월에는 2009년도 재무제표가 확정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매출액·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기업의 2010. 2월 현재 중소기업 여부는 2009. 12월 결산 결과를 적용하여야 하며,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공증받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발급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대부분 3월경에 재무제표가 확정되지만 자본금·매출액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결산 재무제표와 확정 재무제표의 내용은 거의 일치 합니다.

사례 26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법인이 분할한 경우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하나의 기업이 여러 기업으로 분할하여 나누어지는 경우 기존 기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존속법인과 새롭게 설립하는 신설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신설법인은 창업이므로 창업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금을 산정하게 되며, 분할 후 존속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을 창업으로 보는 것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서만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분할 후 신설법인의 창업 인정 범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사례 27

- 3월 결산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때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9개월이라고 하여

9개월의 매출액만으로 산정한다면 12개월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므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일의 변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기간이 9개월이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9개월의 매출액과 이전 3개월을 소급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사례 28

사업자등록만 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기업이 성립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수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성립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출이 전혀 없거나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일부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징수의 형평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Memo

Memo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2.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판단 기준
3. 관계회사 기준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이 규모가 커질 경우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기업 간 출자관계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성 기준을 설명합니다. 독립성 기준은 「상법」상 회사에만 적용하며, 개인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TI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과거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변화된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5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삼성, 한국전력공사 등 53개 기업집단 (1,286개 업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변동사항은 매월 초순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지정된 날부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나.~다. (생략)

관련 법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핵심 포인트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자본금 10억 원입니다. 2010. 3월에 대기업이 출자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A사는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3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였다가 제외되었을 경우에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범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중소기업입니다.

Memo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T I P

모회사가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외국법인일 경우에도 동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직전 사업 연도 말일의 환율과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에서 낮은 환율을 적용합니다.

2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판단 기준

- 우리나라에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600개 정도로 추정(2008년 기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이러한 형태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므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주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은 규모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해당 기업이 주식회사일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접 소유의 경우에는 2009. 3. 27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2009. 3. 26일 이전부터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여 중소기업 제외 요건이 된 경우에는 2011. 12.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며, 2009. 3. 27일 이후에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됩니다.(89페이지 경과조치 참조)



T I P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사,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모펀드(PEF) 등을 말합니다.

동 규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즉,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아래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투자하여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그 투자를 받은 기업은 규모 기준 등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기청 고시 2010-13호)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신기술금융사업자
 -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④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⑤ 금융투자업자(금융 및 보험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 다만,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위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77페이지〈사례30〉참조)

- 최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법인 : 법인의 등기임원
 - 개인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생략)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 13호, 2010. 3. 16 시행)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 및 보험 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핵심 포인트

계열 관계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자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명, 자본금 5,000만 원입니다. 2010. 3. 1일에 자산총액 1조 원인 기업이 주식을 60% 인수한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충족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2010. 3. 1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T I P

예전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투자받은 기업이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2009. 11. 19일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그 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투자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2

상시 근로자 수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35%, B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B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B기업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임원이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3

A기업은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입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70%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동 규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4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A기업이 다른 범위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인가요?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A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2010. 3. 16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77페이지 <사례 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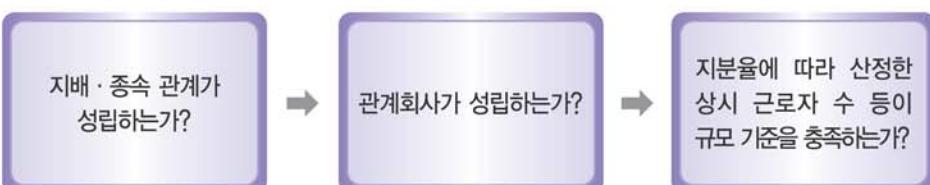
3 관계회사 기준

- 2006년도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 이상이 기업당 평균 7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들 자회사는 개별 기업으로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합하면 대기업과 동등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업 간 출자 비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관계회사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합니다.
- 관계회사 제도의 기본 개념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산총액을 주식 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하고,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 기준 및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소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주식 등 :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총액

※ 최다출자자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지분 소유자

- 이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직접적으로 30% 이상 소유하지 않더라도 지배기업의 자회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자회사,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관계회사 여부를 판정합니다.
- 관계회사 제도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상호간에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관계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주식 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입니다.

※ 관계회사들의 주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도 개별기업의 주업종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의 합산 후 규모기준 적용은 개별기업의 주업종에 따라야 합니다.

T I P

관계회사제도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최상위 지배기업은 주식 회사(외부감사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T I P

관계회사제도는 적용 방식이 복잡하므로 중소기업 및 관계 회사 적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www.smeinfo.go.kr)을 운영 중이니, 적극 이용 바랍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지배 · 종속의 관계

- 먼저 지배 · 종속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지배 · 종속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T I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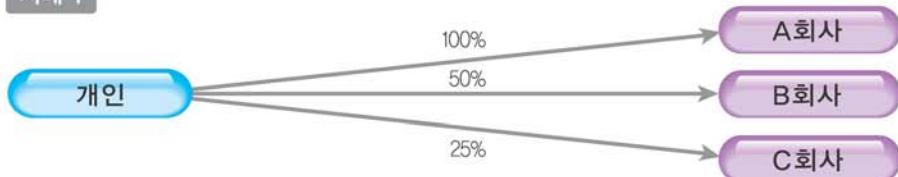
특수관계자에서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나'에 해당하는 자도 존재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란?

- 가.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그 기업의 최대출자자
- 나. '가'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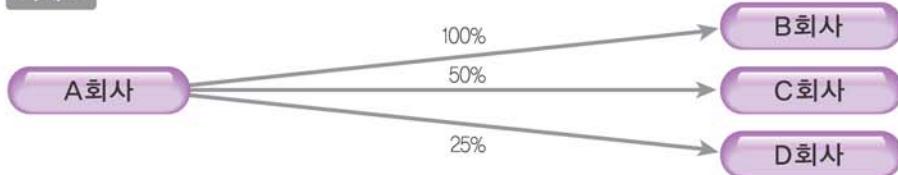
- ① 지배기업,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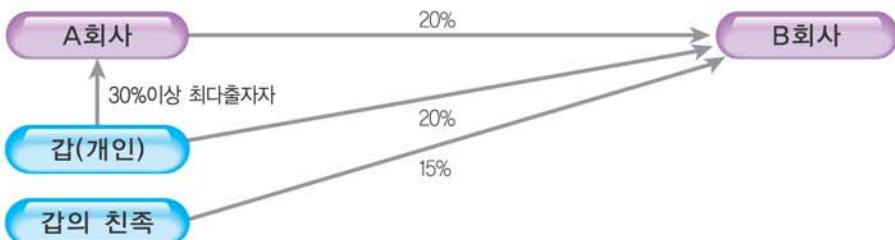


- 개인과 A회사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 : 개인(지배기업), A회사(종속기업)
- 개인과 B회사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 : 개인(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개인과 C회사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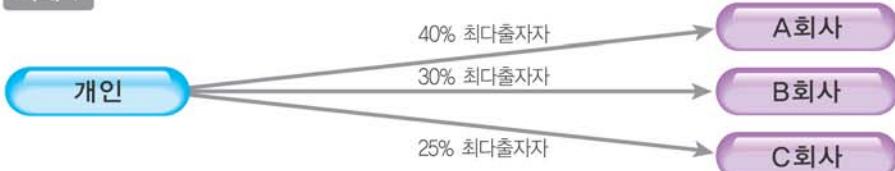


- A회사와 B회사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 : A회사(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A회사와 C회사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 : A회사(지배기업), C회사(종속기업)
- A회사와 D회사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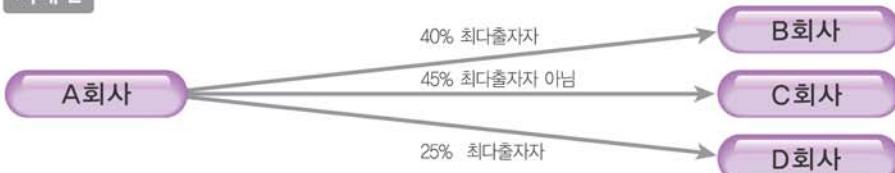
사례 3

A회사의 20%, 갑의 20%, 갑의 친족 15% 주식을 합산하면 B회사에 대해 5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 A회사(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② 지배기업,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에서 50% 미만까지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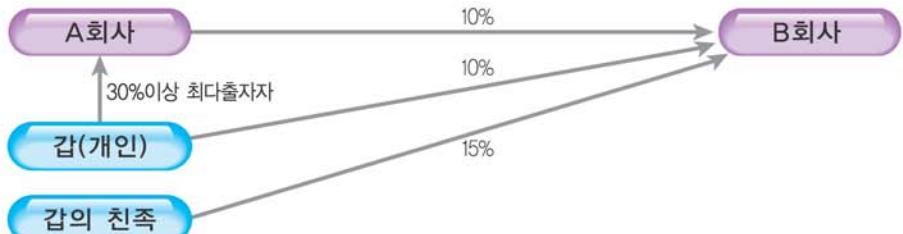
- 개인과 A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개인(지배기업), A회사(종속기업)
- 개인과 B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개인(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개인과 C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2

-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A회사(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A회사와 D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사례 3



A회사, 갑, 갑의 친족이 B회사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면 35%이므로,

- 합산한 35%가 B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합산한 35%가 B기업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TIP

5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연히 최다출자자입니다.

- ③ 지배기업의 자회사(앞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종속기업)가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사례



A회사의 자회사가 B회사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면 40%이므로,

- 합산한 40%가 B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합산한 40%가 B기업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④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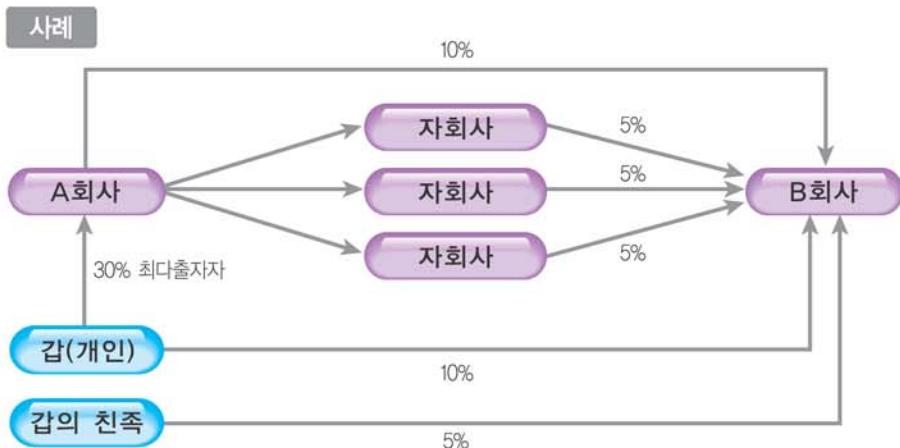
사례



A회사와 자회사가 B회사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면 40%이므로,

- 합산한 40%가 B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합산한 40%가 B기업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⑤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또는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A회사, 갑, 갑의 친족, 자회사가 B기업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면 40%이므로,
 – 합산한 40%가 B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합산한 40%가 B기업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관계회사 제도의 지배·종속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인정하여 지배·종속 관계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 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② 신기술금융사업자
 -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④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⑤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자(별도로 고시 예정)



창업투자회사가 A회사에 대해 소유한 주식이 70%이지만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관련 법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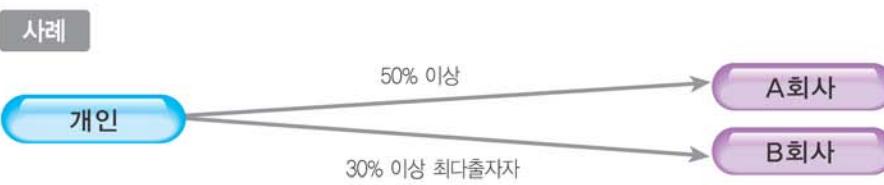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관계회사 해당 여부

- 관계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때 지배기업은 개인 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어야 하며, 종속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와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관계회사입니다.
- 먼저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개인(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다른 기업(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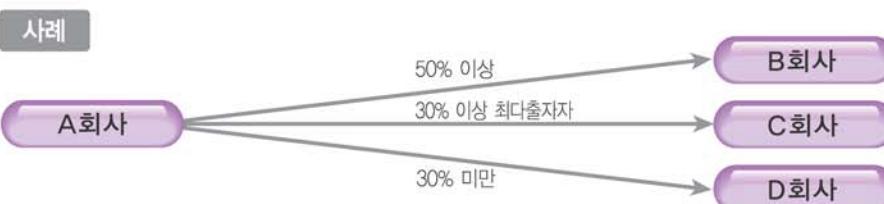


- 개인과 A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개인(지배기업), A회사(종속기업)
- 개인과 B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개인(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가 성립하며, 개인은 관계회사가 될 수 없음
 - ※ 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주식 소유가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등의 합산효과는 없습니다.

T I P

지배·종속의 관계에서 개인은 가상의 지배기업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업이 아니므로 관계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개인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배·종속 관계 및 관계회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② 외부감사 대상 기업(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다른 기업(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A회사(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A회사(지배기업), C회사(종속기업)
 - ※ A회사, B회사, C회사는 관계회사 성립
 - ※ 이 경우 A회사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면 A회사, B회사, C회사는 관계회사가 성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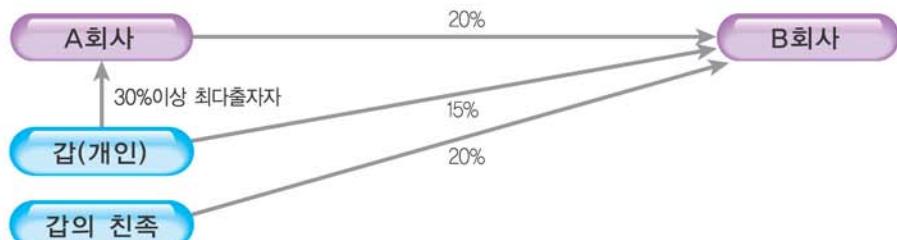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TIP

지배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종속기업의 지분 관계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배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일 경우로 한정하여 관계 회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③ 지배기업(외부감사 대상 기업),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사례



-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A회사(지배기업), B회사(종속기업)
- 갑(개인)과 A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 : 갑(지배기업), A회사(종속기업)
 - ※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 성립
 - ※ 이 경우 A회사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면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가 성립하지 않음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1. ~ 2. (생략)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관계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산정

- 앞에서 설명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회사가 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자기자본(이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주식 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한 결과가 규모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 관계회사 제도에서 용어의 뜻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식 등의 소유 비율	실질적 지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50% 이상 소유
	형식적 지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50% 미만 소유
주식 등의 소유 경로	직접 지배	지배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
	간접 지배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의 주식 등을 소유

TIP

관계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산정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질적 지배 : 지배기업과 자회사(60%), 자회사와 손자회사(60%)
 - 형식적 지배 : 지배기업과 손자회사(40%)
 - 직접 지배 : 지배기업과 자회사(60%), 자회사와 손자회사(60%), 지배기업과 손자회사(40%)
 - 간접 지배 : 지배기업과 손자회사(60%)
- ※ 자회사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손자회사 : 자회사의 종속기업(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

-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산정 기준을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100명) = 400명
- 자회사 : 자회사(100명) + 지배기업(300명) = 400명

TIP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등을 100% 합산합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②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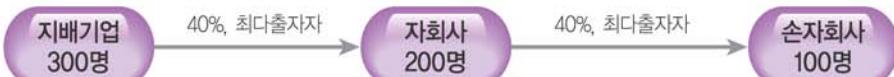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100명×40%) = 340명
- 자회사 : 자회사(100명) + 지배기업(300명×40%) = 220명

③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하고 손자회사를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 + 손자회사(100명×40%) = 540명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지배기업(300명) + 손자회사(100명×40%) = 540명
 - 손자회사 : 손자회사(100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40%) = 300명
- ※ 간접 소유 비율 : $100\% \times 40\% = 40\%$

④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하고 손자회사를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회사(100명×16%) = 396명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모회사(300명×40%) + 손자회사(100명×40%) = 360명
 - 손자회사 : 손자회사(100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16%) = 228명
- ※ 간접 소유 비율 : $40\% \times 40\% = 16\%$

⑤ 지배기업 및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회사(100명×46%) = 426명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지배기업(300명×40%) + 손자회사(100명×40%) = 360명
 - 손자회사 : 손자회사(100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46%) = 338명
- ※ 손자회사 = 직접 30% + 간접 16%(40%×40%) = 46%

TIP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직접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이더라도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 간에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T I P

상호 간에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 ~ 나. (생략)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별표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회사(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의 주주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관련 법조문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핵심 포인트

지배 종속

지배 · 종속의 관계는 기업 간 주식 등의 소유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 1

매출액이 50억 원인 A회사가 매출액이 200억 원인 B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하나요?

- ☞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하며, A회사는 지배기업이고 B회사는 종속기업입니다.



적용 2

국민연금이 B회사의 주식을 35%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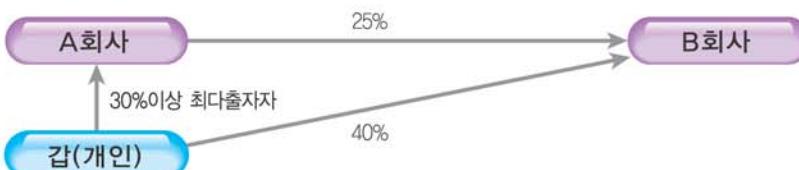
- ☞ 지배 · 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에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비영리법인 이므로 지배 · 종속의 관계 또는 관계회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3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A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갑이 B회사의 주식을 40% 소유한 경우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하나요?

- ☞ A회사와 갑이 B회사에 대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면 65%로서 50%를 초과하므로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T I P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규모가 크더라도 지배 · 종속의 관계는 성립합니다. 지배 · 종속의 관계는 주식 소유 경로에 따라 결정됩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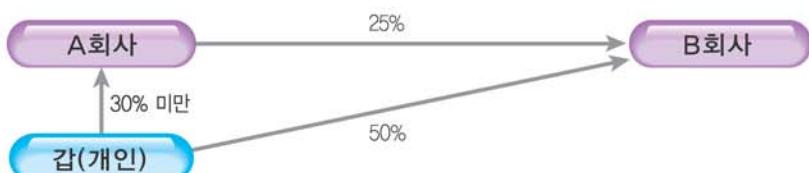
T I P

반대로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있다면 갑이 B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B회사가 지배기업이 되고, A회사가 종속기업이 되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적용 4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A회사의 주식을 25% 소유한 갑이 B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한 경우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나요?

- ☞ A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25%이므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유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주식의 합산은 개인이 지배기업(A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성립할 때만 적용합니다.



적용 5

A회사(주식회사)가 B회사(유한회사)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나요?

- ☞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이면 모두 적용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합니다.

적용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나요?

- ☞ 관계회사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배·종속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 회사 성립 여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개인 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일 경우에만 관계회사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는 관계회사로 봅니다.

적용 1

개인(갑)이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회사 인가요?

- ☞ 갑(지배기업)과 A회사(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갑(지배기업)과 B회사(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입니다.



적용 2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A회사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관계회사인가요?

- ☞ A회사(지배기업)와 B회사(종속기업)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만, A회사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므로 관계회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3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지배기업인 A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관계회사인가요?

- ☞ 외국회사는 국내 법률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4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때, 종속기업인 B회사가 외국 회사인 경우 관계회사인가요?

- ☞ A회사와 B회사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종속기업이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5

A회사(유한회사)가 B회사(주식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 회사인가요?

- ☞ A회사(지배기업)와 B회사(종속기업)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만, A회사가 유한회사로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므로 관계회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B회사(주식회사)가 지배기업이 될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가 성립합니다.

적용 6

A회사(주권상장법인)가 B회사의 주식을 20% 소유하고, A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닌 갑이 B회사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회사인가요?

- ☞ 갑이 A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주식 소유 비율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20%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A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고 B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관계회사입니다.

T I P

외국인투자회사가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관계회사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 3 의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된 회사를 말하고, 외국인투자회사는 외국인이 투자하여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MS가 출자하여 국내에 MS코리아(주)를 설립한 경우 MS는 외국회사이고 MS 코리아(주)는 외국인투자회사입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상 시 근로자 수 등 산 정

관계회사 제도의 최종 목적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 기준 및 상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지배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거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적용 1

A회사(200명)가 B회사(100명)의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A회사(지배기업)가 B회사(종속기업)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A회사 = 200명 + 100명 × 100% = 300명
- B회사 = 100명 + 200명 × 100% = 300명

적용 2

A회사(200명)가 B회사(100명)의 주식을 40%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A회사(지배기업)가 B회사(종속기업)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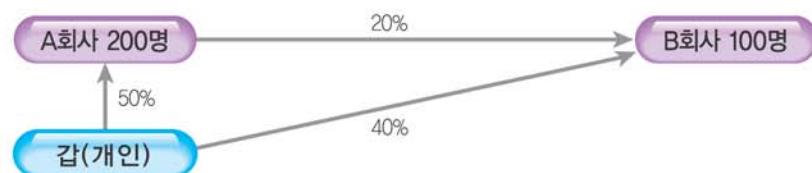
- A회사 = 200명 + 100명 × 40% = 240명
- B회사 = 100명 + 200명 × 40% = 180명

적용 3

A회사(200명)가 B회사(100명)의 주식을 20% 소유하고, A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는 갑이 B회사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A회사(지배기업)가 B회사(종속기업)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A회사 = 200명 + 100명 × 20% = 220명
- B회사 = 100명 + 200명 × 20% = 140명



T I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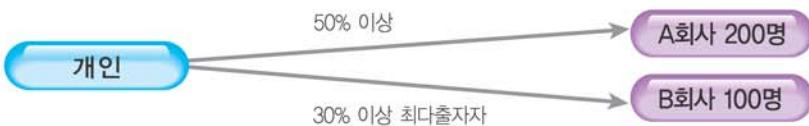
개인 및 친족의 소유주식은 지배·종속 관계 판단에만 합산하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기업 간의 주식 소유 비율만을 적용합니다.

적용 4

개인이 A회사(200명)와 B회사(100명)의 주식을 각각 50% 소유하고 A회사와 B회사 간의 주식 소유는 없는 경우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이지만 회사 간의 주식 소유가 없으므로 A회사와 B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 A회사 = 200명 + 100명 × 0% = 200명
- B회사 = 100명 + 200명 × 0% = 100명

**적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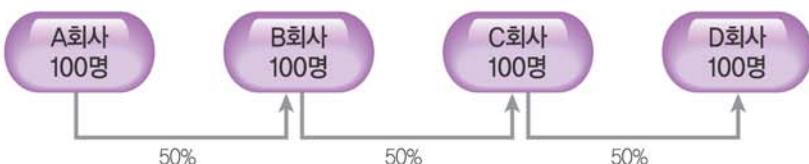
적용 4 의 경우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20% 소유하고 있다면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 3 과 유사한 사례가 됩니다.

- A회사 : 200명 + 100명 × 20% = 220명

적용 6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회사 = A회사(100명) + B회사(100명) + C회사(100명 × 50%) = 250명
- B회사 = B회사(100명) + A회사(100명) + C회사(100명)
+ D회사(100명 × 50%) = 350명
- C회사 = C회사(100명) + A회사(100명 × 50%) + B회사(100명)
+ D회사(100명) = 350명
- D회사 = D회사(100명) + B회사(100명 × 50%) + C회사(100명) = 250명

T I P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죠족의 관계가 성립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합산 효과가 없지만,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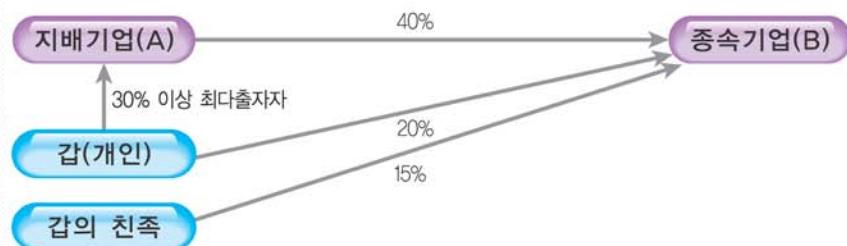
T I P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등의 합산은 간접 소유의 경우 해당 기업을 기준으로 상 · 하 2단계까지만 적용합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적용 7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상시 근로자 수 300명, 자본금 70억 원, 자산총액 1,500억 원, 자기자본 100억 원, 매출액 1,000억 원)가 B회사(상시 근로자 수 100명, 자본금 30억 원, 자산총액 500억 원, 자기자본 5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의 주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A사와 B사의 중소기업 여부는?



- ① A회사, A회사의 주식을 30%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면 75%로서 50%를 초과하므로 지배·종속 관계 성립
- ② 지배기업인 A회사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외부감사 대상 기업 이므로 관계회사 성립
- ③ 관계회사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회사 : 상시 근로자 수 340명, 자본금 82억 원, 자산총액 1,700억 원, 자기자본 120억 원, 매출액 1,120억 원
(산정산식 : A회사 + B회사×40%)
 - B회사 : 상시 근로자 수 220명, 자본금 58억 원, 자산총액 1,100억 원, 자기자본 90억 원, 매출액 700억 원
(산정산식 : B회사 + A회사×40%)
- ④ 최종으로 중소기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A회사는 관계회사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이 제조업의 규모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B회사는 관계회사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TIP

관계회사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 29

- A기업과 B기업은 2009년 말일 현재 중소기업이었으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습니다.
- A기업이 2009년 말일에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 A기업과 B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기업은 2009년 말일 현재 최초로 상한 기준(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10.

1. 1부터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0. 1. 1부터 2011. 12. 31 까지(2년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2012. 1. 1부터는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A기업의 유예 기간은 2년 동안만 인정됩니다.

B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이므로 2010. 1. 1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호에 따라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현행(2010. 5월 현재) 법령에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지만, 상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회사인 A기업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데 반해서 자회사인 B기업은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여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2. 1. 1부터는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입니다.

사례 30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펀드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흔히 말하는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舊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설립 형태상 크게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와 투자신탁 및 조합형으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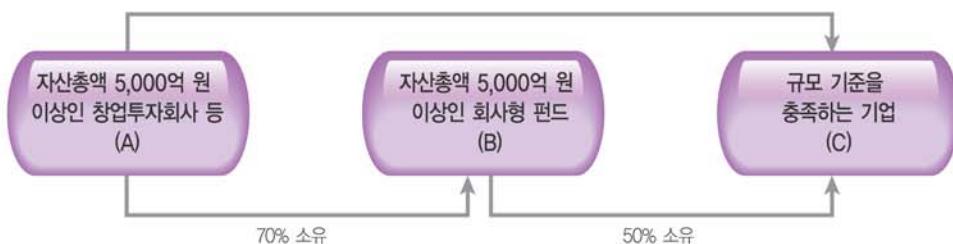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은 주식을 소유하는 펀드의 설립 형태가 상법상 회사형이면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동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10. 3. 16일 이후에는 회사형이더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펀드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입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형 펀드의 출자 지분을 「중기청 고시 2010-13호」에서 지정하는 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등)를 제외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간접소유 규정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여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56페이지 하단부 참조)

〈적용1〉 아래 그림에서 C기업의 주식을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C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적용2〉 아래 그림에서 C기업의 주식을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C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31

-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 원 미만인 B기업이
-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32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기업은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지만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가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은 규모 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사례 33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A회사가 C회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20%, 간접적으로 30% 소유할 경우 주식 소유 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소유 비율과 간접 소유 비율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7 시행)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간접 소유 시점이 2009. 3. 27일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89페이지 참조)

- ① 2009. 3. 26 이전부터 간접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2011. 12. 31까지는 직접 소유 비율(20%)만으로 주식 소유 비율을 적용하며,
- ② 2009. 3. 27 이후부터 간접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직접 소유 비율(20%)과 간접 소유 비율(30%)을 합한 50%를 적용합니다.

사례 34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25%, 그 기업의 임원이 40%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은 일차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주식 소유가 30% 이상임을 전제로 하고, 임원 및 개인, 개인의 친족 등의 주식 합산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25%를 소유한 경우에는 30%를 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대기업의 자회사가 일부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관계회사 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사례 3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간접 소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간접 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접 소유 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로 보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비율을 간접 소유 비율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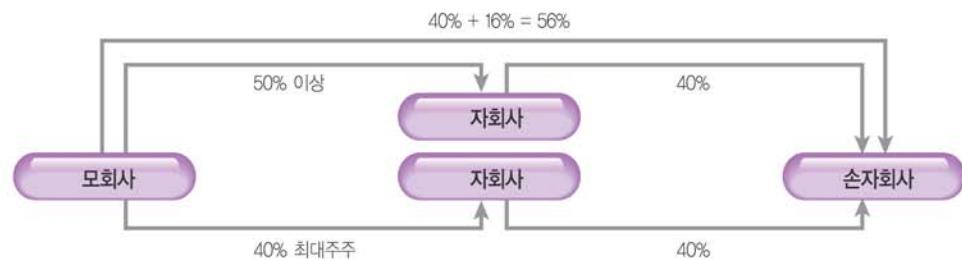
〈적용1〉 아래의 그림은 모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40%를 간접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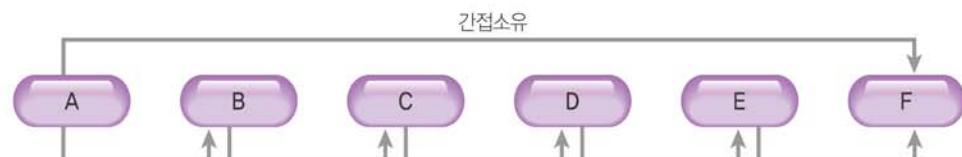
〈적용2〉 아래의 그림은 모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16%를 간접 소유



〈적용3〉 모회사와 손자회사 사이에 두 개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



〈적용4〉 간접 소유는 3개 이상의 연속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만약, 간접 소유에 따른 최대주주 여부는 각 단계별 최대주주가 연속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 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사례 36

-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A기업(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2008. 3월에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외국기업이 60% 소유하는 경우, A기업은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은 2005. 12. 27 이전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국내상장기업일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2005. 12. 27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비상장기업 또는 외국기업일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2005. 12. 26 이전부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칙〈제19189호, 2005. 12. 27〉 제2항 및 부칙〈제20260호, 2007. 9. 10〉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8. 12. 31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2005. 12. 27 이후에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시점부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08. 3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과거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을 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였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을 개정하여 2009. 11. 19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과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사례 37

- A회사의 주식을 공기업인 KBS가 40%, KT가 35%를 소유하고 있으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닙니다. 이 경우 2010. 3월 현재 규모 기준을
- 충족하면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서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KBS(한국방송공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KT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KT가 A사 발행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A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사례 38

아래 기업군의 경우 관계회사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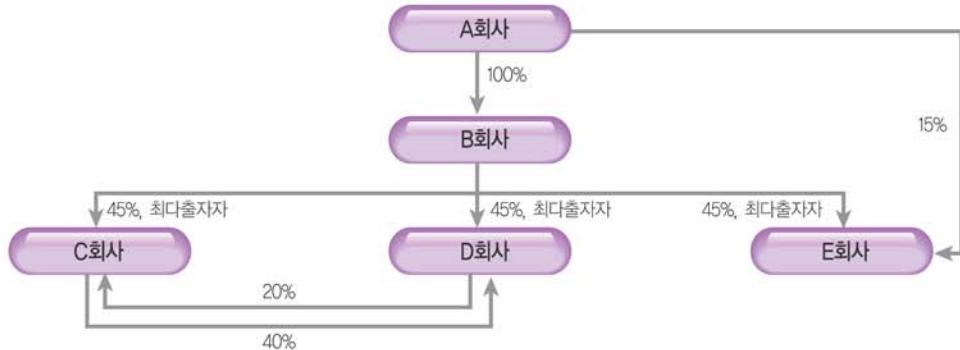
〈주식 소유 비율(%)〉

주주명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A회사		100			15
B회사			45	45	45
C회사				40	
D회사			20		
기타법인					15
기 타			35	15	25
합 계		100	100	100	100

〈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 등(명, 억 원)〉

회사명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상시근로자수	470	80	15	22	15
자산총액	7,900	450	150	9	27
매출액	3,000	200	29	110	58
자본금	250	300	1	1	2
자기자본	6,500	400	7.7	2.3	5

① 앞의 표를 주식 소유 관계에 따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회사	없음	직접 지배 : B, E 간접 지배 : C, D, E
B회사	직접 지배 : A 간접 지배 : 없음	직접 지배 : C, D, E 간접 지배 : C, D
C회사	직접 지배 : B 간접 지배 : A, B	없음
D회사	직접 지배 : B 간접 지배 : A, B	없음
E회사	직접 지배 : A, B 간접 지배 : A	없음

③ 각 회사의 관계회사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회사 = 470(A) + 80(B) × 100% + 15(E) × 15% + 15(C) × 100% × 45%
+ 22(D) × 100% × 45% + 15(E) × 100% × 45% = 575
- B회사 = 80(B) + 470(A) × 100% + 15(C) × 45% + 22(D) × 45%
+ 15(E) × 45% + 15(C) × 40% × 45% + 22(D) × 40% × 45% = 579
- C회사 = 15(C) + 80(B) × 45% + 470(A) × 100% × 45% + 80(B) × 18% = 276
- D회사 = 22(D) + 80(B) × 45% + 470(A) × 100% × 45% + 80(B) × 18% = 283
- E회사 = 15(E) + 470(A) × 15% + 80(B) × 45% + 470(A) × 100% × 45% = 333

※ 상호 간에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많은 비율을 적용

※ 상시 근로자 수의 최종 합산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

④ 매출액,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도 ③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03 기업 간 출자관계 등 판단 기준(독립성 기준)

사례 39

아래 기업군의 경우 관계회사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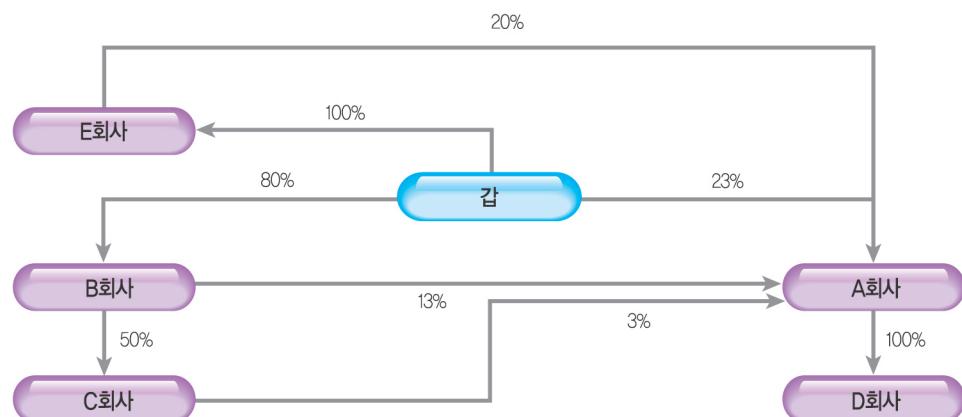
〈주식 소유 비율(%)〉

주주명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갑	23	80			100
A회사					100
B회사	13		50		
C회사	3				
D회사					
E회사	20				
기 타	41	20	5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 등(명, 억 원)〉

주주명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상시 근로자 수	270	138	98	96	41

① 위의 표를 주식 소유 관계에 따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기업만 표시)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회사	직접 지배 : B, E 간접 지배 : B	직접 지배 : D 간접 지배 : 없음
B회사	없음	직접 지배 : A, C 간접 지배 : A, D
C회사	직접 지배 : B 간접 지배 : 없음	없음
D회사	직접 지배 : A 간접 지배 : B, E	없음
E회사	없음	직접 지배 : A 간접 지배 : D

③ 각 회사의 관계회사 제도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회사 = $270(A) + 138(B) \times 13\% + 41(E) \times 20\% + 138(B) \times 3\%$
 $+ 96(D) \times 100\% = 396$
- B회사 = $138(B) + 270(A) \times 13\% + 98(C) \times 100\% + 270(A) \times 3\% + 96(D) \times 13\% = 291$
- C회사 = $98(C) + 138(B) \times 100\% = 236$
- D회사 = $96(D) + 270(A) \times 100\% + 138(B) \times 13\% + 41(E) \times 20\% = 395$
- E회사 = $41(E) + 270(A) \times 20\% + 96(D) \times 20\% = 114$

④ 매출액,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도 ③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Memo

Memo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1. 유예기간
2. 경과조치
3.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기준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중소기업이 범위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 안에서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 · 자금 ·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한 이후에도 3년간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 또는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
 - ③ 창업한 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업종별 규모 기준 또는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12. 1. 1부터 적용)
 - ※ 2011. 12. 31 이전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2012. 1. 1부터는 유예기간 중이었던 기업이라도 상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잔여 유예기간 소멸
 - ⑤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과조치

- 법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자발적 의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업은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법령에는 반영하되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과 즉시 시행하되 변경된 내용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과조치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는 3년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예기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T I P

관계회사 제도는 2009. 3. 26에 법령에 반영하고 시행일은 2011. 1. 1로 함으로써 시행일을 늦추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T I P

유예기간과 달리 경과조치는 법 시행의 시급성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사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범위 기준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적용기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령이 정하는 기간으로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
적용방식	일률적으로 적용 ※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적용하지 않음	범위 변경 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에만 적용 ※ 범위 변경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관련 법조문

〈제21368호, 2009. 3. 25〉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60호, 2007. 9. 10〉

부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9189호, 2005. 12. 27〉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간(2008. 12. 26까지)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3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0명인 기업부터 300인 이상인 기업까지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안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업종	규모기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10명 미만	10명 이상 ~ 50명 미만	50명 이상
광업			
건설업	10명 미만	10명 이상 ~ 50명 미만	50명 이상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TIP

중소기업 중에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구분은 오직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소상공인의 범위 등)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핵심 포인트

T I P

중소기업 여부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예기간도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유예 기간 경과 조치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규모 기준을 벗어날 때 3년간 적용하며, 경과조치는 범위 기준의 강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6월 말 결산법인인 A기업이 2009. 7월부터 2010. 6월 사업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 300명과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예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 유예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부여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0. 7. 1부터 2013. 6. 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입니다.



적용 2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2008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유예기간 중인 2009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 되어 규모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중소기업이 되나요?

-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도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되고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됩니다.
- 따라서, A기업은 2010. 1. 1부터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3

한번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또다시 규모가 확대된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 ☞ 현행 규정은 대기업이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으로 된 후 다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또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향후 유예 기간이 반복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으로 계속 잔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 부여하는 등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유예기간을 최초 1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예 기간을 1회 받았던 기업이 또다시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 기간 중이라도 세법상에서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4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흡수합병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즉시 제외되나요?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는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 하므로 해당 기업은 합병에 따른 법인 변경 등기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 됩니다.

적용 5

호텔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50여 명을 10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 3. 27일에 호텔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축소되었는데 유예기간이 부여 되나요?

- ☞ 호텔업의 업종별 규모 기준은 종전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에서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기업은 중소기업이었다가 2009. 3. 27부터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 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경과조치를 적용 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1368호, 2009. 3. 25> 제2조에 따라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입니다.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적용 6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서 간접 소유의 규정은 2009. 3. 27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이었다가 동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요건이 된 경우는 동 시행령 부칙〈제21368호, 2009. 3. 25〉 제2조에 따라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부칙의 경과조치는 2009. 3. 26 이전부터 간접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9. 3. 27 이후에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므로 유예기간 또한 부여되지 않습니다.

중소 기업 세부 분류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09년에 49명이고, 자본금이 90억 원인 경우 2010년에는 소기업인가요?

☞ 제조업의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므로 A기업은 소기업입니다.

적용 2

건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09년에 9명인 경우 2010년에는 소상공인인가요?

☞ 건설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므로 A기업은 소상공인입니다.

Memo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 4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 이외의 중소기업 범위를 모두 충족하는 A회사의 주식을 B회사가 100% 소유하고, B회사의 주식을 C회사가 5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B회사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고, C회사의 자산총액이 6,000억 원일 경우 A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을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규모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에서 간접 소유의 규정은 2009. 3. 27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동 시행령 부칙<제21368호, 2009. 3. 25>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9. 3. 27일 이전에 위의 간접 소유 관계가 성립하였다면 2011.12.31까지 중소기업입니다.

위 사례에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C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50%를 소유하였으므로 주식 소유 시점이 2009. 3. 26일 이전이라면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이며, 2009. 3. 27일 이후라면 주식 소유 시점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41

- 주업종이 제조업이었던 A기업이 2008년 상시 근로자 수 290명, 자본금 160억 원, 매출액 1,300억 원이며, 2009. 1. 2일에 두 개의 사업부를 분할하여 A기업은 존속하고 B, C기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분할 후 A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B, C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 A기업의 2009년도 상시 근로자 수는 210명, 자본금 100억 원, 매출액 1,000억 원이고 B, C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50명, 자본금은 각각 30억 원입니다.
- 분할 전후 지분 소유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B,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 전〉



〈분할 후〉



04 유예기간 및 규모별 중소기업 구분

- ① A기업은 분할 후 존속법인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의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분할 이후 A기업이 실질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도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 자본금을 기준으로 2009년도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분할 이후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해당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므로 2009년도는 중소기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주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되며, 2009년도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10. 1. 1일부터 2012. 12.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 ② 또한, A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독일기업이 직접 5%, 간접으로 45%의 발행 주식을 소유하여, 합산하여 50%의 발행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간접 소유 규정(2009. 3. 27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간접 소유가 2009. 3. 27일 이전부터 성립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부칙<제21368호, 2009. 3. 25> 제2조의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가 부여되어 2011. 12.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B, C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도 A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9. 1. 2일부터 2009. 3. 26일까지는 해당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이고, 2009. 3. 27일부터 2011. 12. 31일까지는 동 부칙 제2조의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가 부여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 ③ 한편, A, B, C기업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하는 관계회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A기업이 B, C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산정한 A, B, C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각각 업종별 규모 기준을 모두 초과하므로 A, B, C기업은 2011. 1. 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④ ①, ②, ③을 종합하면 A, B, C기업은 2009. 1. 2일부터 2009. 3. 26일까지는 중소기업이며, 2009. 3. 26일부터 2010. 12. 31일까지는 부칙<제21368호, 2009. 3. 25> 제2조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며, 2011. 1. 1일부터는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참고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유예기간을 부여받던 기업이라 할지라도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 시행령 제9조의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잔여 유예기간은 소멸되며, 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경과조치를 부여받던 기업도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동 부칙 단서에 따라 잔여 경과조치는 소멸됩니다.

사례 42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나요?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43

중소기업 확인은 어디서 하며, 확인서를 발급해 주나요?

중소기업 확인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하는 기관이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요구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①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 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 ②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
- ③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 장애인기업의 우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 서류(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최근 주주명부 등)를 지방 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출서류를 확인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사례 44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기업이 납품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대기업 제품 납품, 하도급 생산 납품,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수의 계약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할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접수되며, 조사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기타 공공구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Memo

05 참고자료(법령)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중소기업기본법('08. 12. 26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 12. 31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 03. 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5. 12 .27)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제 · 개정 일반현황(14회 개정)

일자	주요내용	개정이유
2009.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2009.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분류 대분류체계 일원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대분류(6개), 중분류(8개), 소분류(6개), 세분류(6개), 세세분류(6개) 등 32개 업종 → 18개 업종(대분류기준)으로 일원화 ■ 상한기준 추가('12. 1.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 독립성 기준 강화('11. 1.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5천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 관계회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의 전문화 · 대형화 · 융합화 추세 반영 ■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기준 강화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독립성 기준 적용 ■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역량의 효율적 활용 도모
2007.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 단순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
2005.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통신업, 방송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등 13개 서비스업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 상장 · 비상장여부 관계없이 자산 5천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직접 소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여건 변경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 불합리성 개선 ■ '02년 개편시 독립성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기업을 제외하는 기준으로 대체하였으나, 미비점이 있어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계속 중소기업에서 제외

2002.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알선업, 창고업, 운송서비스, 도매, 사업 - 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그밖의 업종의 범위 200% 확대 ■ 상한기준 추가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에서 제외 ■ 독립성 기준 변경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을 중소기업 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 업종별 규모기준이 택일주의로 운영함에 따라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기준 강화 ■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자체 기준 마련
2000.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준 폐지 및 기준 단순화 - 1,126개 업종(특례업종 310개)을 35개 업종 으로 단순화 - 상시근로자 or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도입 ■ 상한기준 도입 - 상시근로자수 1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업종 등 업종별 형평성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업종을 대폭 단순화 ■ 택일주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한 기준을 신설
1997.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기준 변경 - 독점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소 기업에서 제외 ■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수 확대 - 건설업 : 200인 → 300인 이하 - 병원업 : 100인 → 200인 이하 - 관광호텔업 : 100인 → 200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독점거래법의 지배종속관계를 인용하던 것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명확화 ■ 해당업종의 산업발전 추이를 반영
1995. 7.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독점거래법에서 정하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소기업의 범위기준 상향 - 제조업 20인 → 50인 - 건설업 20인 → 30인 - 서비스업 5인 → 1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계열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독립성 기준을 최초 도입 ■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산업발전 추이를 반영
1992.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상향 및 5단계에서 8단계로 확대 - 기준 : 80, 120, 160, 200, 300억원 - 변경 : 120, 150, 200, 250, 300, 400, 500, 600억원 ■ 일부업종의 상시근로자 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규모 확대추세에 따라 범위 조정 및 특례업종 확대 ■ 산업발전 추이를 반영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1992.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처리업 200인 → 300인 - 도매업 30인 → 40인 - 택시운송업 등 10개 업종의 기준 추가 	
198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업종 기준 확대 및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 최대 700인 → 1,000인 - 자산총액 : 최대 120억원 → 300억원 ■ 주업종 및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의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규모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자동화설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범위기준 상향
1986. 6.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 ■ 특례업종을 93개 업종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규모 확대추세에 따라 범위 조정 및 특례업종 확대
1983.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부품제조업 등 30개 업종에 대해 최고 상시근로자수 700인까지 기준 확대 - 일부 업종의 자산 상한기준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위임 ■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해 범위 확대
198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기준(상시근로사수)으로 업종별 규모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300인 이하 - 건설업 : 200인 이하 -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20인 이하 ■ 소기업자의 범위기준 최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 : 20인 이하 -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5인 이하 ■ 유예기간을 최초 도입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기준을 폐지하고 상시근로자수로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발전추이 반영 ■ 소기업 특별지원 근거 마련 ■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자에서 벗어날 경우 3년간 중소기업 혜택 부여 ■ 타법령에서 시책별 특성에 중소기업자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976.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0인 → 300인 - 건설업 : 50인 신설 - 상업 등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1천만원 → 5천만원(도매업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1966. 12.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인 이하 or 자산 5천만원 이하 ■ 상업 등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인 이하 or 자산 1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최초로 명시(기본법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2008. 12. 26. <제9184호>, 현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중소기업시책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①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 확보) 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 (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열화의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분업화를 통하여 서로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열화(系列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조·가공 또는 수리(修理)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 및 위탁 거래 관계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근로 환경의 개선과 고용의 안정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연차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시책의 추진 실적과 중소기업의 동향(動向)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①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②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⑤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23조(의견제출) ①중소기업자·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24조(행정지원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26]

부 칙 (제918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 12. 31. 타법개정(제21831호), 현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 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제3호 2011. 1. 1 시행]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다목 : 2012. 1. 1 시행]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라목 : 2012. 1. 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간접소유는 부칙<제21368호, 2009. 3. 25>에 제2조에 따라 2011. 12. 31까지 경과조치 적용]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다목 : 2011. 1. 1 시행]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의2조 : 2011. 1. 1 시행]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외부감사대상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 ①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 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제7조의2조 : 2011. 1. 1 시행]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 : 2012. 1. 1 시행]
4.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확인 요령)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중소기업 음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중소기업 음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직무 등) ①중소기업 음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②중소기업 음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제21831호, 2009. 1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368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제20260호, 2007. 9. 10〉(개정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9. 3. 25〉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2011. 1. 1. 시행]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회사(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의 주주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나.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 3. 25. <제2136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상시 근로자)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자본금)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외부감사대상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확인 요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 · 업종별 · 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 · 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 · 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②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1368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회사(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의 주주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나.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 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 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5. 12. 27. <제1918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16>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 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 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제9조(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확인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제17606호, 2002. 5. 20〉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제19189호, 2005. 12. 27〉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송업	60~62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호텔업	55111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통신업	6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병원	8511	
	방송업	872	
	증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4	어업	B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통신판매업	5281	
	방문판매업	5289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지원서비스업	75	
	영화산업	871	
5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	
	공연산업	873	
	뉴스 제공업	881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발행일 : 2010년 7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 481-8913, 8948

팩 스 : (042) 472-7929

동 해설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방문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 >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14-14



중소기업정책정보는 www.bizinfo.go.kr
중소기업종합상담은 국번없이 [1357](tel:1357)